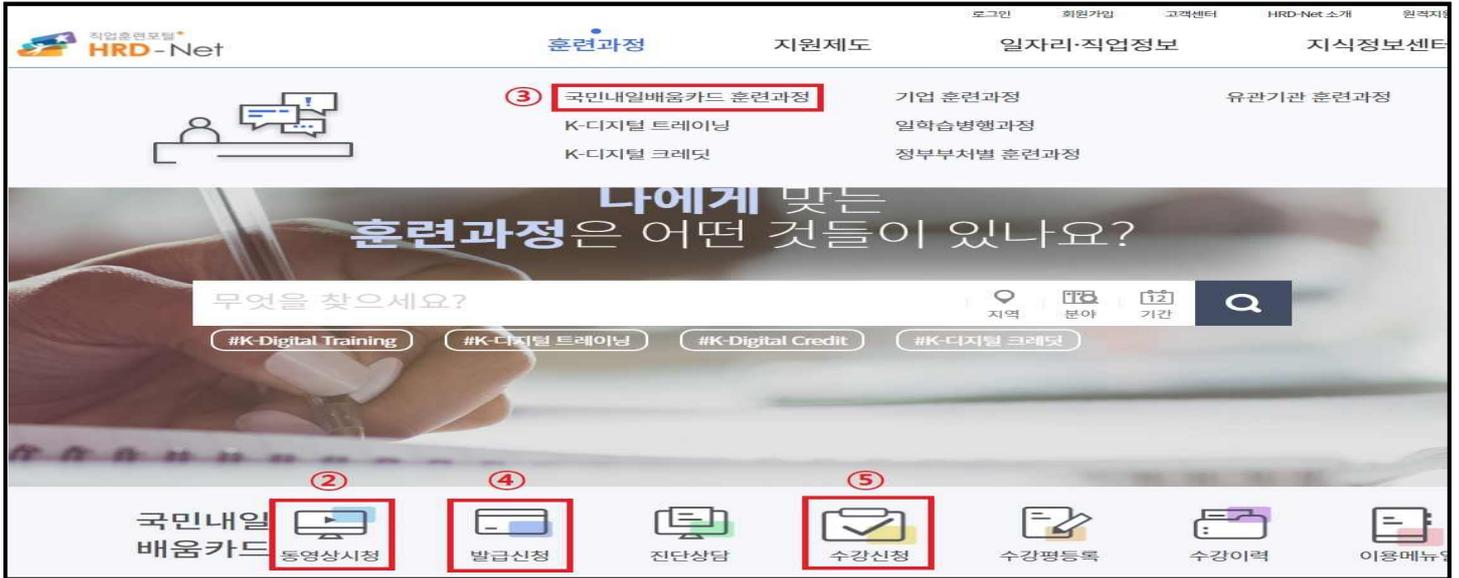


#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

## 인터넷, 모바일 신청가능

- ① 구직신청 : 워크넷(www.work.go.kr) ※구직자, 국기훈련 참여자 필수  
개인회원가입 → 회원정보입력 → 이력서 작성 → 구직신청 (고용센터 구인구직팀 방문 신청도 가능)
- ② 동영상신청 : 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→ 로그인 → 동영상신청 (약 20분 소요)  
※ 휴대전화App Play 스토어 → [고용노동부 HRD-Net 및 출결관리] 설치
- ③ 훈련과정 검색 → 답아두기 / 지역별, 분야별 검색하여 훈련과정 선택  
자비부담액 보기 클릭 → 훈련참여유형 일반훈련생 자비 확인
- ④ 온라인 발급신청 (공동인증서, PASS인증)  
※ 방문신청(오전 9시~오후 5시): 신분증, 자체훈련계획서, 은행계좌번호(본인)
- ⑤ 수강신청(카드 수령 후 가능)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



### ■ 발급 제외 대상

1. 만 15세 미만 또는 만 75세 이상인 자
  2.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을 적용받고 재직 중인 자
  3. 고유번호증 소지자
  4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(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및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발급 가능)
  5. 외국인(체류자격 F-2-5-6은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)
  6. 사업개시 1년 미만 자영업자 또는 연 매출 1억5천만원(임대사업자는 4,800만원) 이상의 자영업자
  7.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보험설계사, 다단계판매, 택배 등)
  8. 만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로서,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자
  9. 고교생 및 대학생, 대학원생  
- 단, 최종학년 졸업예정인 고교생 및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하의 대학생·대학원생은 가능
- ※ 카드 발급 당시에는 발급 제외 대상이 아니었으나, 이후 발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카드 사용이 중지됨.

### ■ 발급 대상 및 필요 구비 서류

1.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: 근로계약서, 최근 급여이체 내역
  2. 자영업자  
- 일반과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최근 1년치)  
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(최근 1년치)  
- 간이과세자 : 사업자등록증
  3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최근 3개월치)
  4. 대규모기업 소속 45세 미만 근로자 : 급여명세서 (최근 3개월치)
- ※ 상기 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, 개별·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.

# [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및 수강신청 안내 ]

◆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훈련과정 탐색 [직업훈련포털([www.hrd.go.kr](http://www.hrd.go.kr))]

◆ 지원내용

계좌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유효기간: 발급결정일로부터 5년 지원한도: 5년간 300만원 훈련비 지원 일정 요건 해당되는 사람은 100~200만원 추가지원 가능</li> <li>●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%~55% 자부담 ※ 훈련공급 과잉 10개 직종은 자비부담 5%p 추가</li> </ul>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1년에 최대 5개 과정까지 수강 가능 ※ 단, 동일직종(NCS직종 세분류 기준)은 1년에 최대 3개 과정까지, 동일과정 재수강은 불가</li> <li>● 수강포기(중도탈락)하거나 미수료 시 횟수에 따라 계좌한도 차감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d><b>1회</b>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</td> <td><b>2회</b>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</td> <td><b>3회</b>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</td> </tr> <tr> <td>20만원 차감</td> <td>50만원 차감</td> <td>100만원 차감</td> </tr> </table>			<b>1회</b>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	<b>2회</b>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	<b>3회</b>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	20만원 차감	50만원 차감	100만원 차감						
<b>1회</b>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	<b>2회</b>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	<b>3회</b>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													
20만원 차감	50만원 차감	100만원 차감													
훈련참여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text-align:center;"> <tr> <th>구분</th> <th>총 훈련시간 140시간 미만</th> <th>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</th> <th>비고</th> </tr> <tr> <td>실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</td> <td>미지급</td> <td>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⇒ 1일 2,500원씩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⇒ 1일 5,800원씩</td> <td>최대한도 월 116,000원</td> </tr> <tr> <td>재직자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</td> <td>미지급</td> <td>미지급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		구분	총 훈련시간 140시간 미만	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	비고	실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	미지급	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⇒ 1일 2,500원씩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⇒ 1일 5,800원씩	최대한도 월 116,000원	재직자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	미지급	미지급	
	구분	총 훈련시간 140시간 미만	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	비고											
	실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	미지급	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⇒ 1일 2,500원씩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⇒ 1일 5,800원씩	최대한도 월 116,000원											
재직자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	미지급	미지급													
※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훈련장려금 지급되지 않음.(훈련장려금 중복 지급 불가)															

◆ 수강신청 방법

1) 140시간 미만 과정 : 온라인 or 훈련기관 방문하여 수강신청 후 수강 가능



2) 140시간 이상 과정 : 온라인 or 고용센터 방문하여 훈련진단·상담 완료 후 수강 가능



◆ 수강신청시 우대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자비부담 추가 경감

⇒ 기초생활수급자, 근로(자녀)장려금 수급자, 한부모가정, 북한이탈주민 등 해당 증빙서류 첨부

◆ 우편수령 신청자는 지정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, 해당 카드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카드사 유선·문자 연락 후, 카드 배송까지 평균 7~10영업일 소요

※※ 신한카드: ☎1544-7000 / 농협카드: ☎1644-4000